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58
----------	-------

발의연월일 : 2026. 3. 13.

발 의 자 : 한민수 · 박상혁 · 임오경
김우영 · 박해철 · 이연희
박균택 · 권철승 · 민병덕
조정식 · 김기표 · 이정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공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회사가 비용 절약 등을 이유로 아파트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보험 가입 의무자와 처벌 대상자를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대사업법인이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 됨.

이에 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화재 보험 가입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제23조의2 신

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3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u> <u>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u> <u>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u> <u>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u> <u>여 제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u> <u>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u> <u>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u> <u>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u> <u>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u> <u>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u> <u>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u> <u>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u> <u>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